

# 인사위원회 규정

제 정 2022.02.18.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본 위원회는 본회 사무국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,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함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위원회는 본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본회 사무국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한 직원에 적용된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부위원장은 본회 사무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, 오산시체육관광과장, 법률가 또는 인사전문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⑤ 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본회 직원 중 회장이 지명한다.

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
2. 직원의 특별 승진에 관한 사항. 단, 정기승진은 제외한다.
3.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4.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5. 본회의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인사관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6조(운영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4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제척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

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사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.

- ② 전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진술권 부여)** 본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.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할 수 있다.

**제9조(심의)**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- ② 본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- 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위원회에 재심의케 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인사위원회 회의록)**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
2. 출석위원의 서명
3. 심의안건과 내용
4. 의사
5. 기타 중요한 사항

**제11조(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)**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,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2조(수당)**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**부 칙(2022.02.18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